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전부개정 2025. 9.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은 조교수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국인 교원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교원을 제외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및 절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자격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그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① 재임용 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교원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교육중점교원: <별표 3>

나. 연구중점교원: <별표 4>

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2.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재임용 통보 절차 등은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임용심사) ① 재임용심사는 <별표 1>로 평정한다.

② 평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과 위촉위원 1명으로 한다.

1. 교육중점교원: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소속 대학(원)장

2.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③ 전항의 위촉위원은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승진임용)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재직기간 8년 이상(다만, 징계처분, 직위해제, 공무상 질병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기간 제외)

2. 교원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교육중점교원: <별표 3>

나. 연구중점교원: <별표 4>

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3.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제9조(승진임용심사) ① 승진임용심사는 <별표 2>로 평정한다.

② 평정위원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위원 1 명으로 한다

③ 전항의 위촉위원은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학기별 1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무)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임용 시 별도 정한 임무를 고려하여 임용계약에 따라 책임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2. 13.)

② 교육중점교원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교육과 관련한 학생지도를 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대학교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처우)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등급에 따른 보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초과 강의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중점교원은 초과 강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연봉조정평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임용 시 연봉조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1. 현재 연봉 등급의 경과연수(2년)가 미달한 경우(다만, 1개월 이내 미달 시 평가대상 포함 가능)
2. 조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4등급(조교수 최고 등급)인 경우
3. 부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6등급(최고 등급)인 경우

② 연봉조정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 연봉등급을 부여받는다.(개정 2026. 6. 12.)

1. 교육중점교원: 평가대상기간 동안 강의평가 평점이 같은 기간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평점 상위 70% 이내(개정 2026. 6. 12.)
2. 연구중점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 ‘다’군 평가조정액 적용 요건 이상
3. 제7조에 따른 재임용 평정 시 평정 결과 평가등급 ‘D’, ‘E’가 없는 사람

③ 연봉조정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전 등급을 부여하며, 그 결과는 2년간 적용한다.

제13조(교수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칙 제77조의 교수회와 제81조의 교수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년 9월 1일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년 3월 1일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5조의 단서조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은 이 규정에 따른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분류된 교원은 재임용 시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으로 재분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14. 2024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3>의 재임용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교육중점교원으로 본다.

부 칙<2026. 2. 13. 2025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12. 2026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2항은 시행일 이후 연봉조정평가를 받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재임용 심사 평정표 (신설 2019.5.17.)(개정 2025. 9. 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평정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심사평정 방법 및 기준] 1.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5개 등급 중 하나로 평정한다. <table><tr><td>등급</td><td>A (매우 우수)</td><td>B (우수)</td><td>C (보통)</td><td>D (미흡)</td><td>E (매우 미흡)</td></tr><tr><td>평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2. 평정자의 합산 평점 평균이 3.0 미만이거나, 평가영역별 평가등급에 'D'이하 등급이 5개 이상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정한다. 3. 평가등급_'D', 'E'를 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점	5	4	3	2	1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점	5	4	3	2	1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1. 교수로서 기본 자질 및 법령 준수	가. 교원으로서 인격과 품위 나. 상벌 상황(포상 및 징계 등) 다. 대학행정 협력 및 제 규정 준수																
2. 교육 역량 (교육중점교원)	가. 교육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나. 교육효과(강의평가 등)																
3.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연구중점교원)	가. 연구업적 실적 나. 학문연구 발전을 위한 역량 다. 국내·외 학술활동																
4. 산학협력 능력과 실적 (산학협력중점교원)	가. 산학협력 실적 나.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능력																
5. 학생지도 및 교내·외 봉사	가. 학생지도 및 소통 노력 나. 교내·외 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 기여도																

평정자		(인)
-----	--	-----

<별표 2> 승진 심사 평정표 (신설 2019.5.17.)(개정 2025. 9. 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 심사 평정표

평정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심사평정 방법 및 기준]					
1.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5개 등급 중 하나로 평정한다.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평점	5	4	3	2	1
2. 평정자의 합산 평점 평균이 3.5 미만이거나, 평가영역별 평가등급에 'D'이하 등급이 4개 이상으로 평정된 사람은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평가등급 'D', 'E'를 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1. 교수로서 기본 자질 및 대학 발전기여도	가. 교원으로서 인격과 품위 나. 상벌 상황(포상 및 징계 등) 다.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및 참여				
2. 교육 역량 (교육중점교원)	가. 교육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나. 교육효과(강의평가 등)				
3.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연구중점교원)	가. 연구업적 실적 나. 학문연구 발전을 위한 역량 다. 국내·외 학술활동				
4. 산학협력 능력과 실적 (산학협력중점교원)	가. 산학협력 실적 나.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능력				
5. 학생지도 및 교내·외 봉사	가. 학생지도 및 소통 노력 나. 교내·외 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 기여도				
평 정 자				(인)	

<별표 3> 교육중점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준(신설 2025.3.1.)(개정 2025. 9. 19.)

1. 재임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책임시간	30	임용기간 전체 학기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학기별로 책임시간 충족여부에 따른 점수를 배점(30점)에서 가감 ¹⁾ ① 미충족 시 -2점/시간 ② 초과 시 +2점/시간
강의평가 평점 ²⁾	70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을 평가하며, 평가 대상 학기 강의평가 평점의 평균에 2를 곱한 값을 반영함 ³⁾
계	100	85점 이상

¹⁾간호학과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원에 한하여, 연간책임시간 기준을 적용

²⁾「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2조 따른 강의평가 평점

³⁾산출된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승진임용: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에 「연구업적 산정기준」에 따른 ‘필수’ 연구업적 연간 평균 100% 이상

<별표 4> 연구중점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준(신설 2025. 9. 19.)

1. 재임용

최소 연구 업적				
계열	구분	신규임용부터	임용 3년차부터	임용 5년차부터
인문	SCIE급(SCI, A&HCI, SCIE), SCOPUS	1편/연	1.5편/연	2편/연
사회	SCIE급(SCI, A&HCI, SCIE)	1편/연	1.5편/연	2편/연
이공	SCIE급(SCI, A&HCI, SCIE)	2편/연	3편/연	4편/연

※ 신규 임용된 교원이 임용 후 1년 이내에 '1건 이상의 연구실적(투고 포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

2. 승진임용: 재임용 기준과 동일

3. 공통사항

구분	내용
평가기간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
평가대상 연구업적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주/교신저자 연구업적으로 「연구업적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최종 '확인'이 완료된 것에 한함 (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 '확인' 완료되어야 함)
최소 연구업적 편수 기준	최소 논문편수는 평가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산학협력 실적	산학협력실적은 SCIE급 연구업적으로 대체 가능(연간 최대 1편) 1. 인문·사회계열: 간접비 연 1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비 5천만원 이상 단일과제 2. 이공: 간접비 연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비 1억원 이상 단일과제